

# 사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(의안번호 제5호 2000. 3. 8)

총무위원회  
전문위원 성호영

## 1. 검토경과

- 가. 2000. 3. 8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0. 3. 8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0. 3. 17 제4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이유

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에 의거 연차별 정원감축 확정시기가 당초 매년 7월 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변경 시행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개정 시기를 재조정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골자

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“7월31일”에서 “6월30일”로 개정함(조례 제381호 부칙 제4조)

## 4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정원확정 시기를 매년 7월31일에서 6월30일로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도 이에 맞추어 정원 개정시기를 6월3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와 관련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사항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임.